

2.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5,786호 1998. 4. 30.

주 요 골 자

- 가. 최근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설이 저조하므로 주상복합건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부분이 70퍼센트 미만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부분이 90퍼센트 미만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령 제32조제1항).
- 나. 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회계감사시기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로 정하고, 회계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군수와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조합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함(령 제42조의3).
- 다. 시장·군수가 재건축조합의 안전진단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에 현지조사와 건설안전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친 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주택을 허물고 재건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령 제42조의4)
- 라. 중소기업이 부동산단보대출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보통신공사업 또는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문화재수리업등록을 하는 경우를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에 추가함.(령 별표 3).

개정이유

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장군수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됨에 따라 회계감사의 시기 및 절차, 안전진단의 실시기관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하며, 동조제6항중 “제1항제10호”를 “제1항제14호”로 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
 3. 농림부장관
 4. 산업자원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환경부장관
 9. 국무조정실장
 10.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

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기술자 1인이상, 대지조성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이상. 제10조의2의 제목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중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을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으로 하며, 동항제2호 후단중 “동시행령 별표 1 제1호”를 “동시행령 별표 1 제3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등록업자가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이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를 “등록업자가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10조의3제3항중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까지”를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 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시까지”로 한다.

제11조제5항중 “건설업법 제13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11조의3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본문중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2조”를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1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사전결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2조제1항제2호중 “70페센트미만”을 “90페센트미만”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6호의2중 “건설업법 제6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로 한다.

제34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4(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법 제33조의4 및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업자가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

으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건축공사업 또는 토목 건축공사업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자일 것

2.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주택용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다만, 재건축조합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권자의 소유권등을 매도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주택용 대지가 저당권·가동기담보권·가입류·전세권·지상권등(이하 이 조에서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가.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당해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은 때

나. 사업주체가 재건축조합인 때

4. 토지소유자·주택조합·고용자 또는 등록업자가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처분, 사업비의 부담, 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책임 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할 것. 이 경우 시공에 대하여는 그 책임자명의로 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4의2.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42조제1항 본문중 “조합주택 건설예정지”를 “가장 많은 수의 조합원이 거주하는 지역(직장조합인 경우에는 직장소재지를 말한다) 또는 조합주택건설예정지”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가목 단서를 삭제하며, 동호나목중 “공급받을 수 있다.”를 “공급하되, 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로 하고, 동호다목을 삭제한다.

제42조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 단서중 “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제4항제1호 · 제2호 및 제2호의2”로 한다.

2의2. 이혼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42조의3 내지 제42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주택조합은 법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20일이내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

2.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가 종료된날부터 15일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시장등과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주택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 주택조합의 사무실에 3월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의4(안전진단 실시) ①시장등은 법 제4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와 건설안전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신청일부터 15일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장등은 안전진단신청이 있는 주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주택이 제4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2. 당해 주택이 제42조의5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

③시장등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중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2.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재건축조합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 가.内外벽체균열의 원인과 평가
 - 나. 부위별 철근의 부식 및 노후의 정도
 - 다. 콘크리트강도시험의 결과
 - 라. 구조물의 변위·변형에 대한 검토
2. 배관 등 설비에 관한 사항
3. 지하층·외벽·옥상 등의 누수 등에 관한 사항

4. 건물의 유지·보수방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⑤시장등은 재건축의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한다.

⑥법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⑦시장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로 하여금 안전진단에 필요한 수수료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⑧안전진단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5(시장등의 재건축사업 시행) ①
법 제44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의 구조상 사용금지의 필요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시장등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당해 재건축

사업의 사업주체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희망사업주체, 사업기간 중의 주거대책 등에 관하여 당해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2조의6(1조합원 1주택의 예외) 법 제44조의3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42조의7(대규모 재건축사업) 법 제4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라 함은 노후·불량주택의 수가 1천세대 이상이거나 재건축사업시행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43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각 협회 및 공제조합은 지회·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점등의 명칭 및 소재지를

등기할 것

2. 새로 설치된 지점등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할 것

④각 협회 및 공제조합은 주사무소 또는 지점등을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그 이전한 뜻, 신소재지에서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할 것

2. 지점등을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이전한 뜻, 신소재지에서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할 것

⑤각 협회 및 공제조합은 제2항 각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점등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3조의16제2항 본문중 “17인”을 “12”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12인”을 “4인”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2인”을 “1인”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제1호”를 “제2항제1호 및 제5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2인”을 “1인”으로 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인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연구책임자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주택분야 또는 금융분야를 전공한 자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소비자보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제43조의17조제1항중 “이사 3인”을 “이사 4인”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이사장 및 이사

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을 “임원의 임기는 3년”을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 제3항, 제12조의2제1항 후단 · 제3항, 제13조제1항 후단, 제15조제1항 · 제2항 본문, 제15조의3제1항 · 제5항 전단, 제15조의4제2항 · 제3항, 제17조제3항 및 제22조의2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특별시장 및 광역 시장”으로 한다.

제45조제4호의3 및 제5호중 “직할시지역”을 각각 “광역시지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동표 제8호라목중 “건설 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을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로 한다.

별표 2 비교란이 가목중 “건설업법”을 “건설 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란의 라목중 “건설

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로 한다.

별표 3 제1호마목을 삭제하고, 동표 제2호 단서중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 제2호 내지 제6호 · 제8호 내지 제16호 및 제20호”를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 내지 제14호”로 하며, 동표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사목중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업무중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다.

다.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대상 항목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별표 3 부표 제4호 ·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부표에 제14호 ·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부표 제19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부표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부표에 제2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부표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부표 제28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부표 제32호중 “국가”를 “국가 ·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교육 · 과학 · 기술 ·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에 한한다.)”로 한다.

4. 주류판매업면허(도매업)	100,000
-----------------	---------

8.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제외하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거전용건축물은 주거전용면적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 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세 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 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때와 주거전용외의 건축물(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다)은 연면적이 165제곱미터(공장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때에 한하며, 증축의 경우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1973. 2. 26이전에 건축허가된 건축물과 1973. 2. 27이후 1975. 12. 4이전에 건축허가된 주거전용건축물로서 증축 후의 주거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주거전용건축물에 있어서는 증축 후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에 해당하는 난을 기준으로 하되 증가면적에 한하여 산정한 금액)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	--

<p>가. 주거전용 건축물</p> <p>(1) 주거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초과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p> <p>(2)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32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p> <p>(3) 주거전용면적 132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p> <p>(4) 주거전용면적 165제곱미터이상 231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p> <p>(5) 주거전용면적 231제곱미터이상 330제곱미터미만인 경우</p> <p>(6) 주거전용면적 330제곱미터이상 660제곱미터미만인 경우</p> <p>(7) 주거전용면적 660제곱미터이상인 경우</p> <p>나. 주거전용외의 건축물(산업단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 또는 읍·면지 역에서 신·증축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용, 종교용,</p>	<p>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300</p> <p>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1,300 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1,000</p> <p>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2,400 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2,000</p> <p>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5,000 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4,000</p> <p>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10,000</p> <p>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17,000</p> <p>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28,00</p>
---	--

<p>자선용, 기타 공익용과 농업 및 축산 업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p> <p>(1) 극장 · 영화관 ·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홍주점 및 단란주점 · 공중위생법 에 의한 유기장 및 특수목욕장용 건축물</p> <p>(2) 기타 철근 및 철골조의 건축물</p> <p>(3) 연와조 및 석조의 건축물</p> <p>(4) 시멘트벽돌 및 블록조의 건축물</p> <p>다.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숙박 시설</p> <p>라.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p> <p>(1)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 축물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도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가격 및 나목을 적용한다.</p> <p>(2) 건축물(주거부분이 공동주택인 경 우를 제외한다)의 연면적이 165제 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1)에 의하 여 산정한 금액과 전체면적을 비거 주용으로 산정한 금액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p>	<p>연면적 제곱미터당 4,000</p> <p>연면적 제곱미터당 1,300</p> <p>연면적 제곱미터당 1,000</p> <p>연면적 제곱미터당 600</p> <p>연면적 제곱미터당 500</p>
--	--

9. 건설업면허(개신의 경우를 제외한다)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2/1,000
------------------------	---------------------------------

14. 정보통신공사업허가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1/1,000
---------------	---------------------------------

15의2. 소방시설공사업면허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1/1,000
-----------------	---------------------------------

15의3. 문화재수리업등록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1/1,000
----------------	---------------------------------

23. 부동산등기(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 정한 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 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 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 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 의 필지로 본다) 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 외한다) 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 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종료에 따라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	--

(1) 주거전용건축물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이상	2,000 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20/1,000
나) 시가표준액 2,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30/1,000
다) 시가표준액 3,000만원이상	4,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라) 시가표준액 4,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50/1,000 시가표준액의 45/1,000
마)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 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60/1,000 시가표준액의 55/1,000
바)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70/1,000 시가표준액의 65/1,000
(2) 주거전용건축물외의 부동산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이상	5,000 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p>나)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 원미만</p> <p>특별시 및 광역시</p> <p>기타 지역</p> <p>다)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p> <p>특별시 및 광역시</p> <p>기타 지역</p> <p>나.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1) 시가표준액 1,0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p> <p>특별시 및 광역시</p> <p>기타지역</p> <p>(2) 시가표준액 3,000만원이상 1억원미만</p> <p>특별시 및 광역시</p> <p>기타 지역</p> <p>(3)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p> <p>특별시 및 광역시</p> <p>기타 지역</p> <p>다. 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p> <p>저당권설정금액 1천만원이상</p>	<p>시가표준액의 40/1,000</p> <p>시가표준액의 35/1,000</p> <p>시가표준액의 50/1,000</p> <p>시가표준액의 45/1,000</p> <p>시가표준액의 25/1,000</p> <p>시가표준액의 20/1,000</p> <p>시가표준액의 40/1,000</p> <p>시가표준액의 35/1,000</p> <p>시가표준액의 60/1,000</p> <p>시가표준액의 55/1,000</p> <p>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p> <p>다만, 매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p>
--	--

25의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록	500,000
----------------------	---------

26.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매매업 등록	
가. 자동차정비업등록(자동차종합정비업 에 한한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100,000
(2) 각 도청소재지	80,000
(3) 기타 지역	50,000
나. 자동차매매업등록	100,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마목·제3호다목의 개정규정과 별표 3 부표 제8호나목 및 동부표 제14호·제15호의2·제15호의3·제25호의2·제32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17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주택사업공제조합은 1998년 6월1일까지 운영위원회를 제43조의16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제6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 ----- ----- ----- 1. 행정자치부장관 2. (현행과 같음) 3. 농림부장관 4. 산업자원부장관 5. (현행과 같음) 6. 보건복지부장관 7. 환경부장관 8. (현행과 같음) 9. 국무조정실장 10.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11~14. (현행과 같음)
②(생략) ③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원 및 건설교통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②(현행과 같음) ③ ----- ----- 재정경제부----- -----.
④ · ⑤(생략) ⑥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 ⑨(현행과 같음)
⑦ ~ ⑨(생략) 제9조(주택건설사업자등의 범위 및 등록 기준등) ①(생략) ②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④ · ⑤(현행과 같음) 제9조(주택건설사업자등의 범위 및 등록 기준등) ①(현행과 같음) ② ----- -----

현 행	개 정 안
<p>1. (생략)</p> <p>2.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대지조성 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이상(외국인인 건설기술자를 고용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 또는 토목분야기술자 각 1인 이상을 말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축분야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대지조성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p>
<p>3. (생략)</p> <p>③ (생략)</p> <p>제10조의2(<u>건설업법</u> 적용배제 기준) ①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등록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2(<u>건설산업기본법</u> 적용배제 기준)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p>
<p>1. (생략)</p> <p>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 및 토목분야기술자 4인 이상. 이 경우 동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사 1급 및 토목분야 기술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 ----- -----동시행령 별표 1 제3호----- -----.</p>

현 행	개 정 안
3. (생략) ②제1항의 등록업자가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5층(건축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층)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10조의3(등록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① · ②(생략) ③등록기준 및 사업실적미달로 인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된 등록업자가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거나 사업승인을 얻어 착공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로 한다. ④ (생략) 제11조(지정업자의 지정기준등) ①~④(생략)	3. (현행과 같음) ②등록업자가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 ----- ----- -----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등록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 또는 행정절차법 제22조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 출시까지-----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정업자의 지정기준등) ①~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③ · ④ (생략)</p> <p>제32조(사업계획의 승인대상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라 함은 1만제곱미터 이상의 일단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생략)</p> <p>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70퍼센트 미만인 경우</p> <p>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 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등으 로 구성되는 사전결정심의위원회를 설 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p> <p>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p>제32조(사업계획의 승인대상등) ①----- 1. (현행과 같음) 2. ----- 90퍼센트 미만----- ②----- ----- ----- ----- ----- ----- ----- ----- -----</p>

현 행	개 정 안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6의2. 법 제45조제1항 각호 또는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	6의2.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
6의3. ~8. (생략)	6의3. ~8. (현행과 같음)
(③)~⑦ (생략)	③)~⑦ (현행과 같음)
제34조의4(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법 제33조의4 및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건축조합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권자의 소유권등을 매도청구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의4(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법 제33조의4 및 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업자가 제10조의2제1항 각호 요건에 해당하거나 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에한다)를 받은 자일 것.	1. -----각호 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

현 행	개 정 안
<p>2.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주택용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대지가 저당권·가동기담보권·가압류·전세권·지상권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당해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주택용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다만, 재건축조합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 소유권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주택용 대지가 저당권·가동기담보권·가압류·전세권·지상권 등(이하 이 조에서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p>
<p>3. 토지소유자·주택조합·고용자 또는 등록업자가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처분, 사업비의 부담, 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책임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할 것. 이 경우 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그 책임자명의로 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p> <p>제37조(주택의 전매행위등의 제한 등) ① (생략)</p>	<p>가.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당해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은 때 나. 사업주체가 재건축조합인 때</p> <p>4. ----- ----- ----- ----- -----시공----- ----- ----- ----- ----- -----.</p> <p>제37조(주택의 전매행위등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법 제38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p> <p>1. ~ 4. (생략)</p> <p>< 신설 ></p>	<p>②----- -----. -----.</p> <p>1. ~ 4. (현행과 같음)</p> <p>4의2.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 6. (현행과 같음)</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p>제42조(주택조합의 설립등) ①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또는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주택 건설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② (생략)</p> <p>③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구성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3.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은 다음 각목의 1의 요건에 적합할 것</p> <p>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주택(당해주택에 부속되는 대지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다만,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p>	<p>제42조(주택조합의 설립등) ①----- ----- -----가장 많은 수의 조합원이 거주하는 지역(직장조합인경우에는 직장소재지를 말한다) 또는 조합주택건설예정지 ----- -----.</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p> <p>가. ----- -----<단서삭제></p>

현 行	개 정 안
<p>나. 복리시설(당해 복리시설에 부속되는 대지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이 경우에는 재건축된 복리시설에 한하여 공급받을 수 있다.</p>	<p>나. ----- ----- ----- ----공급하되, 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p>
<p>다. 임대용 주택 또는 사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p>	<p><삭제></p>
<p>④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 안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2 (현행과 같음) 2의 2. 이혼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자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3.~5. (현행과 같음)</p>
<p>1. · 2. (생략) <신설></p>	<p>⑤----- ----- ----- 제4항제1호 · 제2호 및 제2호의 2----- -----</p>
<p>3.~5. (생략) ⑤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지역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추가가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⑪ (현행과 같음)</p>
<p>⑥~⑪ (생략)</p>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42조의3(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주택조합은 법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20일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 2.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감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별로 실시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적용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시장등과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⑤시장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신설>	<p>⑥주택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 주택조합의 사무실에 3월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42조의4(안전진단의 실시) ①시장등은 법 제4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와 건설안전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신청일부터 15일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시장등은 안전진단신청이 있는 주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주택이 제4조의 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2. 당해 주택이 제42조의5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 <p>③시장등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중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 공단

현 행	개 정 안
	<p>2.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실시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안전진단을 완 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재건축조합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내외벽체균열의 원인과 평가 나. 부위별 철근의 부식 및 노후의 정도 다. 콘크리트 강도시험의 결과 라. 구조물의 변위·변형에 대한 검 토 2. 배관등 설비에 관한 사항 3. 지하층·외벽·옥상 등의 누수 등 에 관한 사항 4. 건물의 유지·보수방안 기타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p>⑤시장등은 재건축의 허용여부를 결정 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 전진단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p> <p>⑥법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 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p>

현 행	개 정 안
<신설>	<p>⑦시장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로 하여금 안전진단에 필요한 수수료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p> <p>⑧안전진단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제42조의5(시장등의 재건축사업 시행) ① 법 제44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의 구조상 상용금지의 필요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p>②시장등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당해 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희망사업주체, 사업기간중의 주거대책 등에 관하여 당해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신 설></p> <p>제43조의2(협회 및 공제조합의 설립등)</p> <p>① · ② (생 략)</p> <p>③ 각 협회 및 공제조합은 지회·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p> <p>1.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설치된 지점등의 명칭 및 소재지</p> <p>2. 새로 설치된 지점등의 소재지에서 는 제2항 각호의 사항</p> <p>3. 이미 설치된 지점등의 소재지에서 는 새로 설치된 지점등의 명칭 및</p>	<p>제42조의6(1조합원 1주택의 예외) 법 제44조의3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p>제42조의7(대규모 재건축사업) 법 제4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라 함은 노후·불량주택의 수가 1천세대이상이거나 재건축사업시행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를 말한다.</p> <p>제43조의2(협회 및 공제조합의 설립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각 협회 및 공제조합은 지회·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 내에 새로 설치된 지점등의 명칭 및 소재지를 등기할 것 2. 새로 설치된 지점등의 소재지에서 는 3주일이내에 제2항 각호의 사항 을 등기할 것

현 행	개 정 안
<p>소재지</p> <p>④조합이 주사무소나 지점등을 이전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p> <p>1. 주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구소재지와 지점등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주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는 제2항 각호의 사항</p> <p>2. 지점등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그 지점등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그 지점등의 신소재지에서는 제2항각호의 사항</p> <p>3. 주사무소 또는 지점등을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 및 지점등의 소재지에서 이전한 뜻</p> <p>⑤제2항 각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p> <p>⑥ (생략)</p> <p>제43조의16(운영위원회의 구성)</p> <p>① (생략)</p> <p>②운영위원회는 다음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각 협회 및 공제조합은 주사무소 또는 지점등을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p> <p>1.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그 이전한 뜻, 신소재지에서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할 것</p> <p>2. 지점등을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이전한 뜻, 신소재지에서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할 것</p> <p>⑤각 협회 및 공제조합은 제2항 각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점등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p> <p>⑥ (현행과 같음)</p> <p>제43조의16(운영위원회의 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12인----- -----.</p>

현 행	개 정 안
1.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임하는 자 12인	1. ----- 4인
2.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 에서 지명하는 자 2인	2. ----- -----1인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인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연구책임자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 서 주택분야 또는 금융분야를 전 공한 자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 이 있는 자 다. 소비자보호법 제2조제3호의 규정 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 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③제2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 로 하되, 재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 다.	③제2항제1호 및 제5호----- ----- ----- ---
④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 장 2인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1인----- -----.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43조의17(조합임원의 정원 · 선출방법 및 임기) ①공제조합에 임원으로서	제43조의 17(조합임원의 정원 · 선출방법 및 임기) ①-----

현 행	개 정 안
이사장 1인·이사 3인과 감사 2인을 두되, 감사중 1인을 비상임으로 한다.	-----이사 4인----- -----
②~④(생략)	②~④(현행과 같음)
⑤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될 수 있으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임원의 임기는 3년----- ----- -----